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84
----------	-------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자 : 임호선 · 한민수 · 이상식
임미애 · 강경숙 · 민병덕
민홍철 · 정춘생 · 이해식
윤종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일반 영리법인의 합병과 달리 조합원인 농업인·어업인 등의 보호와 조직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 나아가 식량안보 기반의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 법률 역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그 공

익성을 이미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농협 유통부문은 구매·판매 기능이 분리된 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이원화 구조의 개선이 요구된 바 있음.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으로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구조개편에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적자가 누적된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어 합병이 지연·무산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유통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 농산물 판로가 상실되어 그 피해가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귀속됨. 특히 유통자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농업인·조합원이라는 점에서 그 취득세 부담은 결국 농업인에게 전가됨.

이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③ ~ ⑩ (생략)	<u>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u> ③ ~ ⑩ (현행과 같음)
------------	--